

인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467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 고 1. A

2. B

3. C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3. 6. 20.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3,819,338원 및 그 중 53,415,051원에 대하여 2022. 6. 18.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 B 사이에 2022.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2. 4. 13. 접수 제996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C 사이에 2022.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2. 4. 12. 접수 제98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27. 피고 A와 피고 A의 D은행에 대한 7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70,000,000원, 보증기한 2025. 4. 2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E은 원고가 피고 E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20. 12. 30.부터 연 7%)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는 2022. 4.경 신용보증사고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2. 6. 7. D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채무원리금 54,272,4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22. 6. 17. 기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잔여 대위변제금 53,415,051원과 지연손해금 112,847원, 채권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291,440원을 합한 53,819,338원이다.

라. 피고 A는 2022. 3.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증여계약(이하 ‘제1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3. 피고 B 앞으로 2022. 3.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A는 2022. 3. 3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증여계약(이하 ‘제2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2. 피고 C 앞으로 2022. 3.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구상금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는 제1, 2 증여로 자신의 책임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1 증여 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B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2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C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제1, 2 증여로 피고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졌는지 여부를 보건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2 증여 당시인 2022. 3. 30. 기준으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인천 강화군 F 대 502㎡, G 답 2002㎡, H 답 828.6㎡(이하 'I 토지'라 한다)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A가 2021. 3. 9. I 토지를 매매대금 23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제1, 2 증여

당시인 2022. 3. 30.에도 그 금액이 230,000,000원임을 전제로, 당시 피고 A의 채무는 총 257,958,321원이어서 제1, 2 증여로 처분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A의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면 피고 A는 무자력상태라고 주장하나, 피고 A가 2021. 3. 9. I 토지를 매매대금 23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및 2022. 3. 30. 당시 I 토지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A가 제1, 2 증여로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미정